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4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1 인

1. 일 시 : 2024년 4월 24일(수) 14:0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4월 16일)

2. 장 소 : 이사회 회의실 (원격영상회의 병행)

3. 참석임원

- 이사(7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김기영 이사, 오승훈 이사, 김영만 이사, 배일환 이사, 이향철 이사 (불참 : 이종민 이사)
- 감사(1인) : 배홍기 감사 (불참 : 이동훈 감사)

4. 안 건

- 제2024-09호 : 2023회계연도 법인감사 결과 보고
- 제2024-1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신청(안)
- 제2024-11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결산(안)
- 제2024-12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
- 제2024-13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 1)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 2)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 3) 교원보수 규정 개정(안)
 - 4)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 5)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 6) 교원 특별채용 내규 개정(안)
 - 7) 직제 규정 개정(안)
 - 8)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9)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10)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간서명			
-----	--	--	--

- 1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12)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 13)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개정(안)
- 14)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개정(안)
- 15)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 개정(안)
- 16) 성인학습성공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제2024-14호 : 광운대학교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 제2024-15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제2024-16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이사 선임 계획(안)
- 제2024-1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 제2024-18호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개정(안)
- 제2024-19호 : 교원징계위원회·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 제2024-20호 : 수익사업에 관한 건
- 제2024-21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7인, 감사 1인)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입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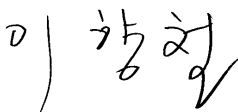
안건 심의 전, 참석임원 전원은 천장호 총장과 인사하고 대학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퇴실함)

제2024-09호 : 2023회계연도 법인감사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4-09호 안건을 상정하고 배흥기 감사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배흥기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따라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각급학교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교육부의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설명하다.

간서명			
-----	---	---	---

배홍기 감사는 내부감사 결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총원을 제고 건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삼덕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보고사항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박주성 전자융합과 부장, 김세헌 네트워크통신과 부장, 정형규 행정실장 입실함)

□ 제2024-10호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신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0호 안건을 상정하고 박주성 부장, 김세헌 부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박주성 부장, 김세헌 부장은 전자융합과 및 네트워크통신과 학과 재구조화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현재 학과명 (2024 기준)	변경 예정 학과명	신입생 모집연도	비고
네트워크통신과	AI정보콘텐츠과	2026	202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신청
전자융합과	시메이커과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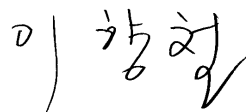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박주성 전자융합과 부장, 김세헌 네트워크통신과 부장 퇴실함)

□ 제2024-11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결산(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1호 안건을 상정하고 각급학교별로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광운중학교 송경언 행정실장, 남대문중학교 고재윤 행정실장, 광운초등학교 주무규 행정실장,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순차로 입실함)

2023학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간사,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행

간서명			
-----	---	---	---

정실장, 광운중학교 행정실장, 남대문중학교 행정실장, 광운초등학교 행정실장, 광운대학교 기획처장의 설명 후 각 기관의 주요 항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다)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결산(안)

구 분	수 입(원)	지 출(원)	차인잔액(원)
법인일반업무회계	1,664,397,705	1,664,397,705	-
법인수익사업회계	997,257,071	997,257,071	-
광운대학교 학교회계	125,115,505,393	125,115,505,393	-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학교회계	12,715,119,595	11,665,718,556	1,049,401,039
광운중학교 학교회계	5,155,897,524	5,134,948,921	20,948,603
남대문중학교 학교회계	6,029,530,270	5,993,181,724	36,348,546
광운초등학교 학교회계	6,886,067,136	6,863,343,526	22,723,610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정형규 행정실장, 광운중학교 송경언 행정실장, 남대문중학교 고재윤 행정실장, 광운초등학교 주무규 행정실장 순차로 퇴실함)

□ 제2024-12호 : 법인 및 각급학교 2023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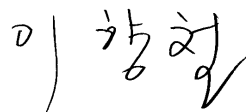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제2024-12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 및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세원 간사는 법인 및 초·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고정자산 변동(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붙임1]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1 : 2023학년도 고정자산 변동내역

간서명			
-----	---	---	---

□ 제2024-14호 : 광운대학교 대학 학사구조 개편(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4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4-13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3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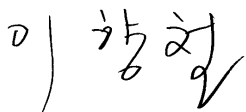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향철 이사는 보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보수 인상 시 급여 곡선에 따른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조선영 의장은 직제 규정 및 사무분장 규정은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하고,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타대학 사례조사 등 면밀한 검토 및 보완 후 재상정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교원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교원 신규임용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교원 특별채용 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직제 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2024.04.24. (부칙 참조)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2024.04.2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간서명			
-----	---	---	---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개정(안)	부결	-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개정(안)	부결	-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 개정(안)	부결	-
성인학습성공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4.04.24.

※ 붙임2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4 : 원안·수정의결안 대비표

□ 제2024-15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15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2024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재임용 기간 변경사항

재임용 대상자				재임용 기간	
소속	직종	직위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글로벌교육센터	외국인 특별전임	교수		2024.03.01. ~ 2027.02.28.(3년)	2024.03.01. ~ 2025.08.31.(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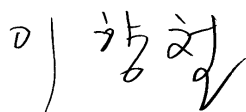
(광운대학교 정석재 기획처장, 전홍배 교무처장 퇴실함)

□ 제2024-16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이사 선임 계획(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6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오승훈 이사의 임기만료 예정에 따른 학교법인 광운학원 개방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법인 추천 위원 4인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간서명			
-----	---	---	---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선임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제2024-17호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7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이향철 이사의 동의와 김영만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붙임5]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5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제2024-18호 :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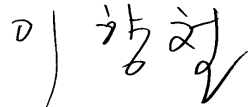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4-19호 : 교원징계위원회·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19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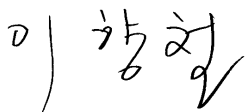
위원회명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초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위원회명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초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 제2024-20호 : 수익사업에 관한 건

□ 제2024-21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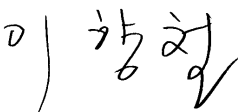
간서명			
-----	---	---	---

조선영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중 이종민 이사의 불참으로 김영만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4-16호, 제2024-19호, 제2024-20호, 제2024-21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6시 00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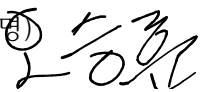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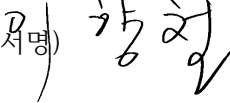
이 사 이 종 민 (서명) 불참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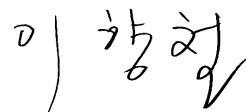
이 사 배 일 환 (서명) 

이 사 이 향 철 (서명) 

감 사 배 흥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불참

2024. 4. 24.

간서명			
-----	---	---	---

2023학년도 고정자산 변동내역

- 광운대학교 고정자산 변동내역
가. 기계기구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기계 기구	등록금 회계	22,473,599,360	난방기 외	-1,095	-1,508,764,657	-2,050,130	폐기
			메타퀘스트 외	560	1,094,975,707		취득
	비등록금 회계	11,871,541,642	난방기 외	-255	-304,680,020		폐기
			모니터 외	462	788,690,197		취득
합계	34,345,141,002					34,413,312,099	

나. 집기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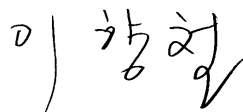
구분	전기이월 장부가액 (원)	폐기 및 취득내역				기말잔액 장부가액 (원)	비고
		물품명	대(점)	장부가액 (원)	폐기 잔존가액 (원)		
집기 비품	등록금 회계	6,069,466,176	분리수거대 외	-1,578	-450,226,470	-1,732,500	폐기
			사무용의자 외	1,085	216,124,440		취득
	비등록금 회계	2,576,131,279	수강용책상 외	-367	-280,079,183		폐기
			책장 외	83	9,684,500		취득
소계	8,645,597,455					8,139,368,242	

-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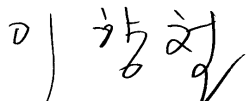
가. 토지 : 필지분할 1건 (면적 및 장부가액 변동사항 없음)

구분	전기이월 (2022회계연도)			증감내역			기말잔액 (2023회계연도)			비고
	지번	면적 (㎡)	장부가액 (원)	지번	면적 (㎡)	장부가액 (원)	지번	면적 (㎡)	장부가액 (원)	
법인 일반회계	월계동 504외 39필지	1,187,494	715,220,900	-	-	-	월계동 504외 40필지	1,187,494	715,220,900	필지분할*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195-2)

* 횡성군 이리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필지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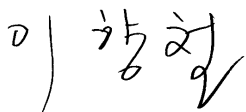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교육인증제에 따라 운영한다.</p> <p>② 제1항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경영대학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삭제
<p>제49조(전공이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39조의3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전공이수는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제4조의 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49조(전공이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p>제51조(복수전공) 복수전공 희망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다른 학부, 다른 학과 또는 동일학부 내의 다른 전공에서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으로 경영학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인증과목(필수, 선택)으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p>	<p>제51조(복수전공) -----</p> <p>-----</p> <p>-----</p> <p>-----</p> <p>----- <단서 삭제> -----</p> <p>-----</p> <p>-----</p> <p>-----</p> <p>-----</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단서 삭제)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정한 규정에 따른다. 2016학년도 입학생까지 복수전공학점은 학과별 입학년도에 따른 전공이 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및 다전공 이수 시 [별표 6]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단, 복수전공으로 건축학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10학기 이상 등록 및 지정된 인증과목(필수)을 순차적으로 9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된다.</p>	<p>----- ----- ----- ----- ----- -----.</p>	
<p>부 칙</p>	<p>부 칙</p> <p>① 이 학칙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 [별표 1] 생략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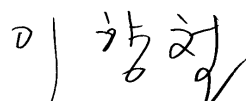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 ----- ----- -----[별표 1], ----- ----- -----</p>	<p>· [별표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학과 반영</p>
<p>제14조의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p>	<p>제14조의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현행과 같음)</p>	<p>· 규정문 형식 띄어쓰기 조정 (이와 동일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괄 개정 전문에 반영)</p>
<p>제15조(입학전공분야 등)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③ 학칙 제 14조의 2에 의하여 등록</p>	<p>제15조(학부지정과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 ③항 삭제에 따른 조명 변경</p> <p>· 정규학기 수료</p>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등재한다.</p>		<p>재입학생에 대한 학점 이수 규정 완화로 학업의지 고취 및 학생 유치 기여</p>
<p>제17조(등록) ① ~ ③ (생략) ④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7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의2에----- ----- ----- -----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p>	<p>·규정문 형식 띄어쓰기 조정 ·정규학기 수료 재입학생에 대한 등록 규정 완화로 학업의지 고취 및 학생유치 기여</p>
<p>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p>	<p>제44조(학위종별) ----- -----[별표 1], -----.</p>	<p>·[별표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학과 반영</p>
<p>부 칙</p>	<p>부 칙 <2024. 4.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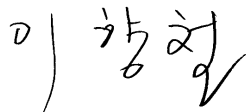
※ [별표 1] 생략

간서명			
-----	---	---	---

원안·수정의결안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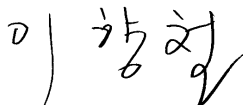
「직제 규정」 원안·수정의결안 대비표

원 안	수정의결안
제47조(90주년사업추진단장) 90주년사업 추진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u>총장의 명을 받아 90주년사업추진단</u> 업무를 총괄한다.	제47조(90주년사업추진단장) 90주년사업 추진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 <u>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u> 」 제4 조제3항에 따라 90주년 기념사업에 <u>필요한 제반</u> 업무를 총괄한다.
제47조의2(90주년사업추진단의 조직) <u>90주년사업추진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u>	제47조의2(90주년사업추진단의 조직) <u>90주년사업추진단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u>

간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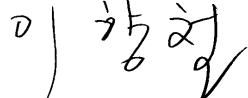
「사무분장 규정」 원안 · 수정의결안 대비표

원 안	수정의결안
<p>제35조(90주년사업추진단) 90주년사업추진단은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실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 시행 및 지원방안 검토</u> 2. <u>대학 자체사업 시행 및 지원방안 검토</u> 3. <u>시행부서 지정 및 조정 총괄</u> 4. <u>기타 기념사업 제반 업무의 검토 및 지원</u> 5. <u>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u> 	<p>제35조(90주년사업추진단) 90주년사업추진단은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실행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u> 2. <u>기타 9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u> 3. <u>대학 자체사업에 관한 업무</u> 4. <u>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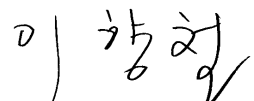
간서명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88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p> <p>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2.04.18.)</p> <p>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변경04.5.7<사학-1188>)</p> <p>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직제 및 분장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2.04.18.)(변경2023.12.26.)</p>	<p>제88조(부속시설) ①----- -- 부속시설(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부속시설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전문개정 2024.04.24.]</p>	<p>·부속시설 규정 정비</p>
<p><신 설></p>	<p>제88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p>	<p>·산학협력단 근거 신설</p>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둔다.</p> <p>②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04.24.]</p>	
<p>제89조(도서관) ①중앙도서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97.12.19 <대행81422-1533>)(변경98.4.24<대행81422-284>)(변경2013.07.24.)(변경2022.04.18.)(변경2023.12.26.)</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제 및 분장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변경97.12.19<대행81422-1533>)(변경2023.12.26.)</p>	<p><삭제></p>	<p>·제88조(부속시설)에 포함</p>
<p><신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간서명			
-----	---	---	---